

## 편집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전력전자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, 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함)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본 위원회는 학회지와 논문의 발간에 관한 기획의 수립, 투고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논문지 논문심사규정”에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3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(이하 위원장) 1명, 편집부위원장(이하 부위원장) 약간 명, 편집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,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-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교체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의 30%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5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1. 정기회의
 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② 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### 제6조(편집자문위원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지/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대한 자문, 특별주제에 대한 편집 등을 위한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편집자문위원은 약간명으로 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